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60 / 전송(02)790-8911  
보험정책국장 이성민(6574) / 보험급여팀장 김선우(6576) / 팀원 임은애(6560) / E-mail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813-00057호

시행일자 2022. 4. 1.

수 신 각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각 전문과목학회 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,  
각 과개원의협의회 회장

참 조

제 목 **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**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671(2022.04.01)

3. 상기호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을 안내 받은 바 이를 귀 회에 송부하오니 첨부내용을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□ 국민안심병원, 호흡기전담클리닉, 외래진료센터 등 관련 수가를 단계적으로 종료

구분(지정)	행위명	종료일자
호흡기전담클리닉(의료기관형)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	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	<b>'22.4.4. 0시부터 종료</b>
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	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(외래, 입원)	
호흡기전담클리닉	의료기관형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	
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	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	
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	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(일반 격리관리료, 음압 격리관리료)	<b>'22.4.18. 0시부터 종료</b>
호흡기전담클리닉	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	
	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(일반 격리관리료, 음압 격리관리료)	
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	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	
	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	

□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대면진료 확대를 위해 「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」 신설  
(산정방법) 외래에서 1일 1회 산정하며 의사 1인당 일 100명 까지 신청 가능  
- 단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및 PCR 검사 당일, 동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 
대면진료 시 ‘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’ 는 산정 불가  
(적용기간) 2022.04.04.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

※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,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 
신청

※ 요양급여청구는 2022.04.18. 부터 가능

(문의) 코로나19 관련 수가 건강보험 지원 : 보험급여과(044-202-2737)

코로나19 관련 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: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(043-719-9368)

외래진료센터 신청·운영 :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(044-202-1866)

붙임 : 보건복지부 공문 및 첨부 각1부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